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규정(안)

제정 2011. 4. 1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작성 및 인가신청
2.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최초의 이사감사 선임 및 승인신청
3.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등기
4. 그 밖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(이하 “총장”이라 한다)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설립준비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.

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총장, 연구부총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국립대학법인 설립등 기 후 사무인계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설립준비실행위원회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

설립준비 실행위원회(이하 “실행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-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, 서울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실행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④ 분과위원회는 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⑤ 실행위원회는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·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- ⑥ 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무와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 안에 법인설립추진단을 둔다. 법인설립추진단의 단장과 약간 명의 부단장은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수당 등) 각 위원회의 위원(분과위원 포함)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1. 4.15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